

[별표 2] <개정 2007.11.20>

과 세 장 소

1. 경마장
2. 삭제 <2000.12.29>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4.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5. 카지노. 다만,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의 카지노로서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입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경륜장